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070
----------	-------

발의연월일 : 2026. 9. 3.

발 의 자 : 이정문 · 문진석 · 이학영
한민수 · 이연희 · 문금주
조승래 · 이인영 · 조계원
박민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 주식시장은 상장기업들의 저평가 현상이 지속되면서 투자자들의 신뢰가 저하되고 자본시장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음. 특히 다수의 상장법인이 과도한 현금성 자산을 내부에 유보한 채 주주환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높은 자기자본이익률(ROE, Return on Equity)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주가 하락 유도 행위 등으로 주가순자산비율(PBR, Price to Book Ratio)을 1 이하로 유지하는 등 자본 운용의 비효율성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주가순자산비율이 2개 사업연도 이상 연속하여 1 미만이고, 2개 사업연도 평균 자기자본이익률이 5% 이상이며 2개 사업연도 평균 이익배당총액이 10% 미만인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목표 배당성향 및 자기자본비용(COE, Cost of Equity)의 산정 기준 등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계획서와 그 이행현황을 작성하여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61조의2 신설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1조의2를 제161조의3으로 하고, 제16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1조의2(기업가치 제고계획서의 제출) ① 주권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서를 정기총회 1주 전까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파산, 구조조정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기업가치 제고계획서의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재무상태표상의 순자산액 대비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개월 간의 일평균을 기준으로 한다)이 2개 사업연도 이상 계속하여 100분의 10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100분의 50)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2. 자본총액(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대비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이하 “자기자본이익률”이라 한다)의 최근 2개 사업연도 평균이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3.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 대비 이익배당총액(이하 “배당성향”이라 한다)의 최근 2개 사업연도 평균이 100분의 10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기업가치 제고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상법」 제462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의 처분 계획 및 목표 배당성향
2. 해당 사업연도의 배당 및 자기주식의 취득·소각·처분 계획 등을 포함한 주주환원 계획
3. 사업구조 개선계획
4. 목표 자기자본이익률
5. 자기자본비용 및 자기자본비용의 산정 방식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기업가치 제고계획서를 제출한 주권상장법인은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그 이행현황을 사업보고서와 같이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주권상장법인은 제1항의 기업가치 제고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재방법 및 서식에 따라야 한다.

제163조의 제목 중 “사업보고서등의”를 “사업보고서등과 기업가치 제고계획서의”로 하고, 같은 조 전단 중 “사업보고서등을”을 “사업보고서등 및 기업가치 제고계획서와 그 이행현황을”로 한다.

제446조제19호의8 중 “제161조의2에”를 “제161조의3에”로 한다.

제449조제1항에 제3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8의2. 제161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기업가치 제고계획서 또는 그 이행현황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업가치 제고계획서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61조의2(기업가치 제고계획서의 제출) ① 주권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서를 정기총회 1주 전까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파산, 구조조정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기업가치 제고계획서의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u> <u>1. 재무상태표상의 순자산액 대비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개월 간의 일평균을 기준으로 한다)이 2개 사업연도 이상 계속하여 100분의 10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주</u>

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100분의 50)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2. 자본총액(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대비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이하 “자기자본이익률”이라 한다)의 최근 2개 사업연도 평균이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3.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 대비 이익배당총액(이하 “배당성향”이라 한다)의 최근 2개 사업연도 평균이 100분의 10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기업가치 제고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상법」 제462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의 처분 계획 및 목표 배당성향

2. 해당 사업연도의 배당 및 자기주식의 취득·소각·처분 계획 등을 포함한 주주환원 계획

3. 사업구조 개선계획

	<u>4. 목표 자기자본이익률</u> <u>5. 자기자본비용 및 자기자본비용의 산정 방식</u> <u>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 ③ 제1항에 따라 기업가치 제고계획서를 제출한 주권상장법인은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그 이행현황을 사업보고서와 같이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주권상장법인은 제1항의 기업가치 제고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재방법 및 서식에 따라야 한다.
제161조의2(자료요구권 등) (생략)	제161조의3(자료요구권 등) (현행 제161조의2와 같음)
제163조(사업보고서등의 공시)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u>사업보고서등을</u> 3년간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업경영 등 비밀유지와 투자자 보호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163조(사업보고서등과 기업가치 제고계획서의 공시) ----- ----- <u>사업보고서등</u> <u>및 기업가치 제고계획서와 그 이행현황을</u> ----- ----- ----- ----- -----

사항을 제외하고 비치 및 공시 할 수 있다.	----- ----- ----- -----.
제4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 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1. ~ 19의7. (생 략) 19의8. 정당한 이유 없이 제119 조의2 또는 제161조의2에 따 른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 인의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 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20. ~ 64. (생 략) 제4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 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8. (생 략) <u><신 설></u>	제446조(벌칙) ----- ----- ----- -----. 1. ~ 19의7. (현행과 같음) 19의8. ----- -----제161조의3에----- ----- ----- 20. ~ 64. (현행과 같음) 제449조(과태료) ① ----- ----- ----- -----. 1. ~ 38. (현행과 같음) 38의2. 제161조의2제1항 또는 <u>제3항을 위반하여 기업가치 제고계획서 또는 그 이행현황 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u>
39. ~ 49. (생 략) ② ~ ④ (생 략)	39. ~ 49.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